임금 인상 LA

LA 최저 임금 및 유급 병가 안내지

최저 임금 조례

2016년 7월 1일부터 로스앤젤레스시 내에서 특정 주간에 2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은 로스앤젤레스시의 최저 임금 및 병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유급 병가(PSL)

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두 가지 방법:
1) 연간 48시간 제공
2) 근무한 30시간당 1시간의 PSL
발생 및 사용하지 않은 PSL은 다음 연도로 이월, 최소 72시간으로 제한될 수 있음.

청구

임금기준국에 직접 방문하거나, 우편, 온라인 또는 MyLA 311 앱을 통해 임금 또는 유급 병가를 청구하거나 보복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	7/1/23	7/1/24	7/1/25	7/1/26
모든 고용주	$16.78	$17.28	$17.87	$18.42

로스앤젤레스의 고용주는 모든 지방, 주 및 연방의 최저임금법과 노동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임금기준국(Office of Wage Standards)으로 문의하십시오.

1-844-WAGESLA (924-3752) WAGESLA@LACITY.ORG WAGESLA.LACITY.GOV

로스앤젤레스시는 미국 장애인법 제2조에 따른 적용 대상 기관으로서 장애를 사유로 차별하지 않으며, 요청 시 프로그램, 서비스 및 활동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합당한 편의 조정을 제공할 것입니다.